

울산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1092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10927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7가단1774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재권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호

변론 종결2020. 4. 2.

판결 선고2020. 5. 7.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7가단1774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C 토지에 대한 투자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울산 북구 C 토지 중 6126/46250 지분에 대한 투자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4. 1. 8. 원고 명의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위 지분을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5,800만 원을 울산 북구 C 토지(이하 'C 토지'라고 한다)에 다시 투자하기로 하면서 2004. 7. 21. 피고와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C 토지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명의는 제3자로 한다.

2. 은행 대출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1억 원 중 5,800만 원은 위 C 토지지분의 매도대금으로 갈음하고, 4,2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

3. 다만 위 4,2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가 2004. 7. 28.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2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한다.

4. 피고는 2005. 1. 8.까지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 및 이자를 반환한다.

(3) 원고는 2004. 7. 26. 피고에게 위 나머지 매매대금 4,200만 원 중 2,700만 원을 피고의 배우자

F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04. 7. 27. G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면서 그 중 1,500만 원은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1,500만 원 상당의 수표는 원고로부터 위 나머지 매매대금 4,200만 원의 일부로 수령하였다(갑 제12호증 제3면).

(5) 이로써 원고가 약정한 투자금 1억 원(= 5,800만 원 + 2,700만 원 + 1,500만 원)은 피고에게 모두 지급되었다.

(6) 원고는 2004. 9. 23. 2,000만 원 및 2004. 11. 15.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7)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C 토지 투자금 1억 원 중 2004. 9. 6. 4,000만 원, 2006. 11. 30.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2호증, 을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정한 투자금 반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투자금 5,000만 원(= 1억 원 -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1 약정금'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1) 500만 원의 추가 변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약정금 5,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8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08. 4. 25. 원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9, 1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위 500만 원이 송금된 일자(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1 약정금 중 일부를 마지막으로 변제한 2016. 11. 30.)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이고, ② 원고는 2008. 4. 25. 피고로부터 위 500만 원을 송금 받은 이후인 2009. 2. 12.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③ 피고는 위 2009. 2. 12.자 송금액 5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0, 11호증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④ 피고는 2018. 1. 20. 원고에게

원고의 C 토지 등에 대한 투자금에 관한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고, 위 정산서에는 원고의 투자내역과 피고의 변제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위 2008. 4. 25.자 송금액 500만 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송금액 500만 원이 이 사건 1 약정금 중 일부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3,000만 원의 상계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4. 7. 27.자 대여금 3,000만 원 이외에도 2004. 7. 21.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므로 위 추가 대여금 채권 3,000만 원과 이 사건 1 약정금 중 3,000만 원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04. 7.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04. 7. 25.까지 피고에게 위 E동 토지 지분 매도대금 5,800만 원, 현금 4,200만 원, 대출금 5,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C 토지를 매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만일 원고가 투자를 결정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그 투자금을 6개월 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면을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면의 하단에 기재된 "1부 5리/1달 3,000만 원" 부분 아래에는 원고의 기명 및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 1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면에 기재된 "1부 5리/1달 3,000만 원"은 원고가 C 토지에 투자를 결정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하기로 한 돈으로서 2004. 7. 27.자 대여금과 동일한 대여금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가) 위 합의서면은 그 문언상 원고가 C 토지를 매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그 조건을 조율하고 원고의 투자 의사결정의 종기를 확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합의서면이 작성된 2004. 7. 21. 이 사건 합의각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각서에 포함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액수(3,000만 원) 및 이자율(월 1.5%)이 위 합의서면 하단에 기재된 대여금의 조건과 동일하다.

(다) 위 합의서면과 이 사건 합의각서는 모두 원고의 C 토지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고, 원고가 C 토지에 투자함에 있어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할 돈은 매매대금 1억 5,000만원 중 위 C

토지의 지분 투자금 및 이익금 합계 5,800만 원과 대출금 5,000만 원을 제외한 4,200만 원이며, 원고가 2004. 7. 26. 피고에게 그 중 2,700만 원을 지급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실제 지급액 4,200만 원을 초과하여 2004. 7. 21. 3,000만 원, 2004. 7. 27.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차용할 이유가 없다.

(라) 피고는 2018.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위 정산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2004. 7. 27. 원고에게 대여한 3,000만 원의 출처 및 사용용도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2004. 7. 21.자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소멸시효 완성 피고는 이 사건 1 약정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그 변제기로부터 5년 또는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1 약정금 채권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C 토지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위 약정금 채권이 상사채권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C 토지 투자금의 반환 약정일이 2005. 1. 28.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7. 11. 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 20. 원고에게 위 E동 토지 지분 및 C 토지의 투자금 중 반환되지 않은 투자금이 3,500만 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정산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위 약정서를 통하여 확인한 미 반환 투자금 3,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 및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각 이유 없다.

3. D 외 5필지 토지에 대한 투자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및 피고는 2008. 1. 23. H으로부터 울산 북구 D 외 5필지 토지 중 일부 지분(면적 약 500평에 해당하는 지분, 이하 'E동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2,500만 원(평당 65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근저당 설정금액 8,000만 원은 원고 및 피고가 승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2억 4,500만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2008. 2. 15., 잔금 1억 4,500만 원은 2008. 3. 7.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위 나머지 매매대금 2억 4,500만 원을 1/2(1억 2,250만 원)씩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위 투자와 관련하여 2008. 3.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른 사실확인서

5. 계약서에 준하여 설정금액 8,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억 4,500만 원 중

3. 5. 입금액 3,000만 원을 공제한 9,250만 원을 원고의 동의하에 3개월 쓰는 걸로 1부 금액으로 차용하였고 변제일은 2008. 6. 5.이다.

6. 명의는 F 앞으로 되어 있으나 지분 250평은 원고의 것임을 확인한다.

(3) 원고는 E동 토지 지분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08. 3. 5. 3,000만 원, 2008. 5. 30.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현금 2,05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08. 6. 5.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6,2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6,200만 원이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로 출금되었다.

(5) 한편 피고는 E동 토지 지분을 처분하였고, 2009. 12. 4. 원고의 위 지분 투자금 1억 6,250만 원[= 1억 2,250만 원(원고의 실제 투자금) + 4,000만 원(원고가 승계한 근저당권 설정금액 4,000만 원)]을 E동 토지 지분 매도 당시의 시가인 1억 8,750만 원으로 평가한 다음 그 반환에 갈음하여 피고가 처남 I을 대리하여 I 소유의 울산 북구 J 토지 중 625평(평당 30만 원)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6) 그러나 원고는 I으로부터 위 J 토지 중 625평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함으로써 E동 토지 지분 투자금 1억 2,25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후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E동 토지 지분 투자금으로 합계 6,2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수표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

다. 청구원인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표는 원고의 E동 토지 지분 투자금의 일부로서 피고에게 교부되었음을 알 수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E동 토지 지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투자금 1억 2,25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에 반환에 갈음하여 다른 토지의 대물변제를 약정하는 등 위 투자금의 반환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 투자금 1억 2,250만 원(이하 '이 사건 2 약정금'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E동 토지 지분 매매계약 및 피고가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그 매매대금은 2008. 3. 7.까지 매도인에게 모두 지급되었을 것이고, 원고가 분담하기로 한 투자금 1억 2,250만 원 중 2008. 3. 2.자 송금액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250만 원은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수표가 인출된 2008. 6. 5.은 위 차용금 9,250만 원의 변제일이고,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영수증상의 영수금액과 위 수표 인출금액은 모두 6,200만 원으로 같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표는 위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위 영수증은 위 수표의 수령을 증빙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위 영수증이 원고의 2008. 3. 2.자 송금액 3,000만 원 및 2008. 5. 30.자 송금액 1,000만 원과 2008. 6. 5.자 현금 지급액 2,000만 원 및 위 차용금 9,250만 원에 대한 이자 200만 원 등 합계 6,200만 원에 대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현금 2,000만 원의 지급일이 위 영수증 작성일인 2008. 6. 5.이라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 9,250만 원에 대한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가 1개월에 1%인 925,000원으로 정해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 200만 원은 위 약정이율과 전혀 맞지 않는 금액이다.

(4) 만일 원고가 위 차용금 9,25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를 보았을 것임에도 피고는 위 영수증 작성일인 2008. 6. 5.로부터 2018. 6. 12.자 준비서면 제출 이전까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거나 원고로부터 위 원리금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5) 피고는 E동 토지 지분을 처분한 다음 2009. 12. 4.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 1억 6,250만 원을 위 지분 처분 당시의 시가인 1억 8,750만 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처남 I의 토지 중 625평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이 약정한 투자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위 대물변제 약정 당시 원고의 투자금 기준액 1억 8,750만 원에 해당하는 E동 토지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 250평 × 75만 원)과 대물변제 받을 토지의 면적(= 625평 × 30만 원)은 모두 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데, 만일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약정한 투자금 중 일부인 6,200만 원만 투자하였다면 그 금액에 상당한 면적의 토지만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이 체결되었을 것이다.

라.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1) 소멸시효 완성 피고는 이 사건 2 약정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그 변제기로부터 5년 또는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2 약정금 채권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E동 토지 지분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위 2 약정금 채권이 상사채권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E동 토지 지분 투자금 최종지급일이 2008. 6. 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적어도 위 지분 투자금의 반환약정일은 위 최종지급일 이후일 것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17. 11. 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2) 상계항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E동 토지 지분 약정투자금 1억 2,250만 원 중 미지급한 6,250만 원에 대하여 위 차용금 9,250만 원의 변제기 다음날인 2008. 6. 6.부터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투자금과 위 이자 합계액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08. 6. 5.까지 이 사건 수표를 비롯하여 약정투자금 1억 2,25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원고가 위 투자금 중 6,250만 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상계항변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약정금 중 3,500만 원 및 이 사건 2 약정금 1억 2,250만 원 등 합계 1억 6,750만 원과 각 반환 약정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17.부터 그 중 (1) 제1심판결 인용금액인 1억 5,25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 18.까지는, (2) 이 법원 추가 인용금액인 1,5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5. 7.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복열

판사김현진

판사신형철